서울대학교 시신기증 절차 및 방법

시신 기증 절차

(1)

고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

사망하신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신기증상담실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.

2

집에서 사망하신 경우

시신을 양도 후 시체 검안을 합니다.(사망 진단서와 시체 검안서는 법적으로 동일합니다)

3

사고로 돌아가신 경우

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 외에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시신이 양도됩니다.

(4**)**

장례식

사망진단서 가 발급된 후 의과대학으로 연락을 하신 후 장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 이 경우 시신인도는 발인하는 날에 하게 됩니다.

서울대학교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식을 하길 원하시면 빈방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C급은 무료이며 특급이나 A급, B급은 차액을 부담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다른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
(5)

시신기증이 불가능한 경우

큰 사고로 인하여 몸의 손상이 심한 경우, 후천성면역결핍증(에이즈)으로 진단 받은 경우, 큰 수술로 인하여

장기가 심하게 제거된 경우 또는 방부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.

6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신 인도 후 절차

인도 받은 시신은 의과대학에서 방부처리를 합니다.

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교수의 지도 아래 의과대학 학생과 대학원생에 의해서만 시행되며 세심 한 주의와 정성을

기울여 시행됩니다.

7

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마쳐진 후 절차

사망한 때로부터 2~3년 안에 화장이 시행될 것입니다. 화장을 한 후 분골은 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원하실 경우에는 대학에 마련된 납골실을 20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납골실 사용료는 없습니다.

시신 기증 비용

- 시신의 운반이나 처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과대학에서 부담합니다. 시신 기증 취소
- 당사자가 의과대학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해서 언제든지 기증서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.

시신 기증 연락처

- 월요일~금요일 (오전9시~오후6시)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 3층 308호 시신기증상담실 TEL) 02-740-8213, 8400 FAX) 02-740-8410
- 그 외 시간(야간),공휴일(24시간) TEL) 02-740-8100, 8010